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정도검사 등에 관한 고시

[시행 2022. 1. 14.]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2-2호, 2022. 1. 14., 일부개정]

국립환경과학원(환경측정분석센터), 032-560-8385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정도검사의 방법과 기준・주기 및 교정용품의 검정의 내용・방법 및 유효기간, 정도검사 또는 검정결과의 기록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환경측정기기"라 함은 규칙 제2조에 따른 측정기기를 말한다.
2. "성능시험"이라 함은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장이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에서 해당기기의 구조・성능을 확인하는 시험을 말한다.
3. "정도검사"라 함은 규칙 제7조제2항과 제3항에 따라 받는 검사를 말한다.
4.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이라 함은 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
5. "측정범위"라 함은 규칙 제2조에 따른 환경측정기기 중 측정기는 해당 측정항목의 범위를 말하며, 시료채취장치는 차압범위 또는 순간유량의 범위를 말한다.
6. "공인측정오차범위"라 함은 환경측정기기의 측정 자료의 반복성, 재현성 및 직선성 등 대표적인 기기오차를 말하며, 공인오차범위를 나타낼 때에는 해당 항목의 오차를 정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7. "예비성능시험"이라 함은 새로이 개발되거나 도입하고자 하는 환경측정기기의 측정방법, 원리, 성능, 구조 등을 확인하는 시험을 말한다.
8. "최소눈금(단위)" 라 함은 측정범위를 최소 단위로 구분한 값을 말한다.
9. 데이터의 통계적 해석방법은 따로 규정이 없는 한 한국산업규격 KS Q 5002 (데이터의 통계적 해석방법-제1부 : 데이터의 통계적 기술)에 따른다.
10. "다항목측정기기(Multi)"라 함은 2개 이상의 항목이 하나의 검출기, 측정셀, 측정결과 표시창 등 하나의 물리적 구조를 가지며 동시에 측정되도록 구성된 측정기기를 말한다.
11. "형식승인 변경대상" 이라 함은 환경측정기기의 형식(모델명)이 동일하나, 구조와 프로그램이 변경되어 성능에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로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이 성능시험 신청시 제출한 측정기기의 구조를 직접 확인하고 판단한다.
12. "국가공인기관"이라 함은 「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교정업무 전담기관, 같은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인정을 받은 시험・검사기관 및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을 말한다.

제2조의2(적용범위) 이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정도검사의 적용을 받는 환경측정기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경 오염도를 측정하여 그 결과를 행정목적에 사용하는 환경측정기기
2. 환경 오염도를 측정하여 그 결과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외부에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환경측정기기

제3조(구조・성능에 대한 세부기준 등) ① 규칙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환경측정기기의 구조・성능에 대한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새로이 개발된 측정방법이나 원리의 환경측정기기는 제1항에 따른 구조・성능에 대한 세부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조의2에 따른 현행 구조・성능 및 성능시험방법의 세부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새로운 방식의 예비형식승인 대상 환경측정기기는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이 구조・성능에 대한 기준과 현장적용시험이 포함된 예비인증기준을 마련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의 승인을 득한 후 이를 대체할 수 있다.

제4조(성능시험의 절차・방법)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규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에 성능시험을 하게 하는 때에는 형식승인(형식승인변경을 포함한다)을 얻고자 하는 자(이하 "승인신청자"라 한다)가 성능시험을 할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을 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라 승인신청자가 성능시험을 할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을 정한 때에는 해당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에게 성능시험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신청자는 성능시험을 하는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에게 형식승인대상 환경측정기기를 제출하고 규칙 제30조에 따른 성능시험수수료를 납부(신용카드 납부 가능)하여야 한다.

③ 성능시험을 의뢰받은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은 해당 환경측정기기에 대하여 별표 2를 준수하여 성능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의1서식(국문) 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영문)에 따라 작성한 후 신청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1. 자동차, 소음진동, 토양 및 먹는물 분야 : 30일
2. 대기, 수질 및 실내공기질 분야 : 40일

④ 승인신청자가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른 형식승인(변경)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미리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성능시험신청서를 제출하여 제3항에 따른 성능시험성적서를 발급받아 형식승인(변경)신청을 하는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성능시험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⑤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은 성능시험을 함에 있어 자체적으로 개발하였거나 공동참여 등의 방식으로 개발한 환경측정기기에 대해서는 스스로 성능시험을 할 수 없다.

⑥ 단, 승인신청자는 규칙 제2조에 따른 환경측정기기 중 분야가 다르나 해당 측정기기의 모델, 구조・규격 및 성능이 동일하여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이 별지 제5호서식의 환경측정기기 구조・규격 및 성능시험성적서 비교표를 발급하는 경우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른 성능시험을 생략할 수 있고, 이 경우 수수료는 1/3로 경감한다.

제4조의2(예비성능시험의 절차・방법) ① 예비성능시험 신청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규칙 제6조의2에 따른 예비형식승인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미리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에게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예비성능시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예비성능시험신청자로부터 신청받은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은 해당 환경측정기기에 대하여 제4조의3에 따라 심의를 받아 결정한 예비형식승인기준, 예비성능시험방법, 시험기간, 예비성능시험 수수료에 따라 예비성능시험

을 실시하고, 별지 제2의1서식의 예비성능시험성적서를 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은 예비성능시험을 함에 있어 자체적으로 개발하였거나 공동참여 등의 방식으로 개발한 환경측정기기에 대하여는 스스로 예비성능시험을 할 수 없다.

제4조의3(예비형식승인 기준 등에 대한 적합성 심의) ① 제3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예비형식승인 대상 환경측정기기는 예비형식승인 신청자가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미리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에 해당 환경측정기기의 측정원리, 구조, 성능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 예비형식승인기준 등에 대한 사전 적합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

②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은 제1항에 따른 사전 적합성 검토를 함에 있어 5인 이상의 관계전문가 회의를 통하여 예비형식승인기준의 타당성, 예비성능시험방법, 성능시험기간, 정도검사방법, 성능시험 및 정도검사의 수수료 등에 관한 내용을 검토하고, 작성한 예비형식승인기준(안)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예비형식승인 기준 등의 적합성에 대하여 별표 6의 "환경측정기기 예비형식승인 기준 적합성 등에 관한 심의 절차"에 따라 제출일부터 20일 이내에 심의하고,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환경측정기기의 예비형식승인기준, 예비성능시험방법, 예비성능시험기간, 정도검사방법, 정도검사기간, 성능시험 및 정도검사의 수수료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결정하고, 이를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에 통보하여 예비형식승인 절차가 신속히 진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3항에 따른 성능시험 또는 정도검사의 수수료를 결정함에 있어 규칙 제30조에 따른 기존의 수수료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때에는 별도의 수수료를 정하도록 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제4조의4(사용 중인 기기의 변경승인) ① 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최초 정도검사를 받고 사용 중인 기기가 환경 관련 규정의 개정에 따라 운용프로그램 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 해당 기기는 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도래하는 정도검사 또는 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의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에 따른 정도확인시험에서 적합 판정을 받으면 계속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운용프로그램이 변경된 제1항의 기기와 동일한 형식의 기기를 제작 또는 수입하여 유통·판매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 제3조에 따라 형식승인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형식승인표시) 규칙 제4조에 따라 형식승인을 얻은 자가 당해 환경 측정기기에 부착하여야 하는 형식승인 표는 규칙 별표 1의2와 같다.

제6조(정도검사 신청) 규칙 제7조에 따른 정도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에게 규칙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정도검사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7조(정도검사의 기준·방법·주기) ① 환경측정기기의 정도검사 기준은 별표 1의1과 같다.

② 정도검사 신청을 받은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은 별표 2의1에 따른 정도검사 방법에 따라 정도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은「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른 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가 굴뚝 배출가스(이산화황·질소산화물·염화수소·불화수소·암모니아·일산화탄소·이산화탄소·메탄·산소·먼지) 연속 자동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에 대해 상대정확도시험을 포함한 정도확인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규칙 제7조제2항에 따른 최초 정도검사를 할 때 현장적용계수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은 정도검사를 실시하면서 다음 각 호의 점검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자동차분야

1. 1. 원동기동력계 및 그 부속기기에 대한 정도검사 점검표 (별지 제3-1-1호 서식)

1. 2. 차대동력계 및 그 부속기기

1. 2.1 차대동력계 및 그 부속기기에 대한 정도검사 점검표 (4륜차용・2륜차용) (별지 제3-1-2-1호 서식)

1. 2.2 차대동력계 및 그 부속기기에 대한 정도검사 점검표 (소형・대형 운행차용 및 IM240-배기유량직접방법용) (별지 제3-1-2-2호 서식)

1. 3. 원동기 및 차대동력계용 배출가스 측정장치 및 그 부속기기

1. 3.1 원동기 및 차대동력계용 배출가스 측정장치(4륜차용, 2륜차용) 및 그 부속 기기에 대한 정도검사 점검표 (별지 제3-1-3-1호 서식)

1. 3.2 차대동력계용 배출가스 측정장치 및 그 부속기기에 대한 정도검사 점검표 (운행차용) (별지 제3-1-3-2호 서식)

1. 3.3 차대동력계용 배출가스 측정장치 및 그 부속기기에 대한 정도검사 점검표(IM240-배기유량직접방법용) (별지 제3-1-3-3호 서식)

1. 3.4 차대동력계용 배출가스 측정장치 및 그 부속기기에 대한 정도검사 점검표(경유자동차 질소산화물 분석기-운행차용) (별지 제3-1-3-4호 서식)

1. 3.5 원동기 및 차대동력계용 배출가스 측정장치 및 그 부속기기에 대한 정도검사 점검표(암모니아 측정장치 및 그 부속기기) (별지 제3-1-3-5호 서식)

1. 4. 증발가스분석기 및 그 부속기기에 대한 정도검사 점검표 (별지 제3-1-4호 서식)

1. 5. 자동차 배출가스(일산화탄소 및 탄화수소) 분석기・공기과잉률 측정 기 및 그 부속기기에 대한 정도검사 점검표 (별지 제3-1-5호 서식)

1. 6. 입자형태의 물질 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에 대한 정도검사 점검표

1. 6.1 입자형태의 물질 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에 대한 정도검사 점검표(차대용) (별지 제3-1-6-1호 서식)

1. 6.2 입자형태의 물질 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에 대한 정도검사 점검표(원동기용) (별지 제3-1-6-2호 서식)

1. 6.3 입자형태의 물질 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에 대한 정도검사 점검표(전체용) (별지 제3-1-6-3호 서식)

1. 6.4 입자개수 측정장치 및 그 부속기기에 대한 정도검사 점검표 (별지 제3-1-6-4호 서식)

1. 7. 매연측정기에 대한 정도검사 점검표

1. 7.1 여지반사식 매연측정기에 대한 정도검사 점검표 (별지 제3-1-7-1호 서식)

1. 7.2 부분유량 채취방식 광투과식 매연측정기에 대한 정도검사 점점표 (별지 제3-1-7-2호 서식)

1. 8. 매연측정용 비디오 및 그 부속기기에 대한 정도검사 점검표 (별지 제3-1-8호 서식)

1. 9. 운행차 배출가스 원격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에 대한 정도검사 점검표

1. 9.1 운행차 배출가스 원격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에 대한 정도검사 점검표(가스상 원격측정기) (별지 제3-1-9-1호 서식)

1. 9.2 운행차 배출가스 원격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에 대한 정도검사 점검표(매연 원격측정기) (별지 제3-1-9-2호 서식)

1. 10. 이동식 배출가스 측정장치 및 그 부속기기에 대한 점검표 (별지 제3-1-10호 서식)

2. 대기분야

2. 1. 대기배출가스(이산화황・질소산화물・일산화탄소・총탄화수소 및 산소)측정기 및 부속기기 대한 정도검사 점검표 (별지 제3-2-1호 서식)

2. 2. 굴뚝배출가스(이산화황・질소산화물・염화수소・불화수소・암모니아・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메탄・산소・먼지)연속자동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 대한 정도검사 점검표 (별지 제3-2-2호 서식)

2. 3. 대기(이산화황・일산화탄소・질소산화물・오존・먼지 및 미세먼지(PM10, PM2.5))연속자동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 대한 정도검사 점검표 (별지 제3-2-3호 서식)

2. 4. 굴뚝 시료채취장치 및 그 부속기기에 대한 정도검사 점검표 (별지 제3-2-4호 서식)

2. 5. 미세먼지(PM10, PM2.5) 시료채취장치 및 그 부속기기에 대한 정도검사 점검표 (별지 제3-2-5호 서식)

3. 수질분야

3. 1. 수질(용존산소, 화학적산소요구량,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총질소, 총인, 총유기탄소, 수소이온농도, 부유물질) 연속자동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 정도검사 점검표(별지 제 3-3-1호 서식)

4. 소음・진동분야

4. 1. 소음계 및 그 부속기기에 대한 정도검사 점검표 (별지 제3-4-1호 서식)

4. 2. 소음연속자동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에 대한 정도검사 점검표 (별지 제3-4-2호 서식)

4. 3. 진동레벨계 및 그 부속기기에 대한 정도검사 점검표 (별지 제3-4-3호 서식)

5. 토양분야

5. 1. 지하매설저장시설 또는 지상저장시설 액상부 누출측정기기 및 그 부속기기에 대한 정도검사 점검표 (별지 제3-5-1호 서식)

5. 2. 지하매설저장시설 기상부 누출측정기기 및 그 부속기기에 대한 정도검사 점검표 (별지 제3-5-2호 서식)

6. 먹는물 분야

6. 1. 탁도 또는 잔류염소 연속자동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에 대한 정도검사 점검표 (별지 제3-6-1호 서식)

7. 실내공기질분야

7. 1. 실내공간오염물질(미세먼지(PM10, PM2.5)・휘발성유기화합물・석면, 총부유세균 및 부유곰팡이) 시료채취장치 및 그 부속기기에 대한 정도검사 점검표 (별지 제3-7-1-1 내지 별지 제3-7-1-6호 서식)

7. 2. 실내공간오염물질(미세먼지(PM10, PM2.5)・일산화탄소・이산화탄소・오존・이산화질소 및 라돈) 자동 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에 대한 정도검사 점검표 (별지 제3-7-2-1 내지 별지 제3-7-2-4호 서식)

④ 자동차 배출가스(일산화탄소 및 탄화수소) 분석기・공기과잉률 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와 매연측정기가 통합되어 있는 시스템(통신포트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 및 하나의 케이스 내에 분리 장착한 경우 포함)은 별표 1 및 별표 2에서 정하고 있는 구조・성능기준과 성능시험방법에 따라 검사를 받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각각의 측정기를 완전 통합하여 형식승인 받은 내용과 다른 새로운 기종의 통합측정기를 제작하였을 경우는 그 구조와 성능이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하고 별도의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규칙 제2조제2호의 대기연속자동측정기나 제2조제3호의 수질분야(용존산소, 화학적산소요구량 및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총질소, 총인, 총 유기탄소, 수소이온농도, 부유물질) 연속자동

측정기의 정도검사는 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으로 지정(인력, 시설, 장비, 능력)을 받은 기관과 측정기의 유지관리에 대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위탁기관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정기검사를 정도검사 방법과 동일하게 수행할 경우 이를 정기검사로 갈음할 수 있다.

⑥ 규칙 제7조제4항에 따른 환경측정기기 정도검사 주기는 별표 7과 7의1과 같다.

제8조(정도검사 기록부 교부・비치 및 부적합 결과 통보 등) ① 정도검사의 신청을 받은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은 제7조제1항에 따른 해당 기기의 정도검사 점검표에 따라 정도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1-1호 내지 제3-7-2-3호 서식의 정도검사 점검표, 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정도검사기록부 및 별지 제9호서식의 정도검사 증명서(적합한 경우에 한함)에 기재한 후 이를 정도검사 신청한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도검사를 받은 자는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으로부터 교부받은 정도검사점검표 및 정도검사기록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다음번 정도검사 신청 시에 정도검사기록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은 제1항에 따른 정도검사 결과 부적합한 경우에 정도검사 기록부 사본을 국립환경과학원과 해당 지방자치단체 시・군・구에 동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교정용품의 규격과 기준) ① 규칙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교정용품의 규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표준가스 및 표준물질은 다음의 정확도를 가져야 하며,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이 그 품질을 보증하는 것이어야 한다.
   가. 제작자동차 배출가스 측정용 기기에 사용하는 교정용 가스는 표시 농도의 ±1 %이하의 정확도를 가져야 하며 정도검사 시 가스의 정도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운행차 배출가스 측정용 기기에 사용하는 교정용 가스는 표시 농도의 ±2 %이하의 정확도를 가져야 한다.
   다. 그 외 분야의 측정기기의 교정에 사용하는 교정용 가스는 표시 농도의 ±2 %이하의 정확도를 가져야 하며, 교정액 및 시약은 특급이상인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교정용 가스의 유효기간은 별표 3의5에 따른다.
3. 자동차분야의 매연포집용 여과지는 KS R ISO 10054규격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이 그 품질을 보증하는 것이어야 한다. 또한, 검정성적서는 규칙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4. 자동차분야의 교정용 매연표준지 및 교정용매연표준필터는 매연농도 값의 ±2 % 범위 이하의 정확도를 가져야 한다. 검정성적서는 규칙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5. 자동차분야의 교정용 매연표준지의 유효기간은 검정을 받은 날부터 6 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로 하고, 교정용 매연표준필터의 유효기간은 검정을 받은 날부터 12 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로 한다. 다만, 계속 사용할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일 ±15 일 이하에 검정을 받아야 한다.
6. 교정용 매연표준지는 4 매(20 %, 30 %, 40 %, 50 %), 교정용 매연표준필터는 4개(40 %, 50 %, 60 %, 80 %), 교정용 가스는 사용하는 성분별로 한 개 이상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제10조(검정방법 및 절차) 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교정용품의 규격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정방법 및 절차는 별표 3과 같다.

② 국가 또는 국가공인기관에서 검정받은 교정용가스 및 교정액(시약)은 제1항에 따라 검정을 받아 합격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1조(검정의 신청・표지 등) ① 교정용품에 대하여 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에게 규칙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은 검정 결과 적합한 때에는 규칙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성적서를 발급・보관하고, 규칙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검정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교정용품을 사용하는 자는 교정용품이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다시 검정을 받아야 한다.

제12조(검사 또는 검정결과의 기록・보존) ①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은 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 또는 검정의 결과를 기록한 제4조의 성능시험성적서, 제8조의 정도검사 점검표, 제9조의 검정성적서, 별표 5의 품질(QA/QC) 점검표 등과 이를 입증하는 원자료를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 해당 자료는 출력물이 아닌 전산화된 시스템으로 보관되어도 기록보존으로 인정하나, 전산으로 기록된 자료는 수정이 불가하여야 하며 기록을 수정하여야 하는 경우 수정사항을 추적할 수 있도록 원래의 데이터와 수정된 데이터를 모두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제13조(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의 현장평가 및 사후관리)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의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에 대한 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규칙 제10조제4항 별표 7의2에 따라 현장평가는 관련 공무원 1명 이상과 전문가 1명 이상으로 평가팀을 구성하여 별표 4에 따라 실시하며, 법 제28조제2항 및 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는 국립환경과학원의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 사후관리 운영지침에 따라 실시한다.

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에 대하여 제1항의 사후관리를 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다만, 법 제18조의2에 따른 시험・검사기관의 정도관리를 받은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은 제1항의 사후관리를 정도관리로 갈음할 수 있다.

제14조(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의 자율관리 등) ①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이 국립환경과학원의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 사후관리 운영지침에 준하여 자율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는 경우,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로 갈음할 수 있다.

② 규칙 별표 1의 환경측정기기 기준 검사실의 세부기준은 별표 8과 같다.

제15조(재검토기한) 국립환경과학원장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22-2호,2022.1.14.>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원동기 및 차대동력계용 배출가스 측정장치 및 그 부속기기에 대한 정도검사 점검표(암모니아 측정장치 및 그 부속기기) (별지 제3-1-3-5호 서식) 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